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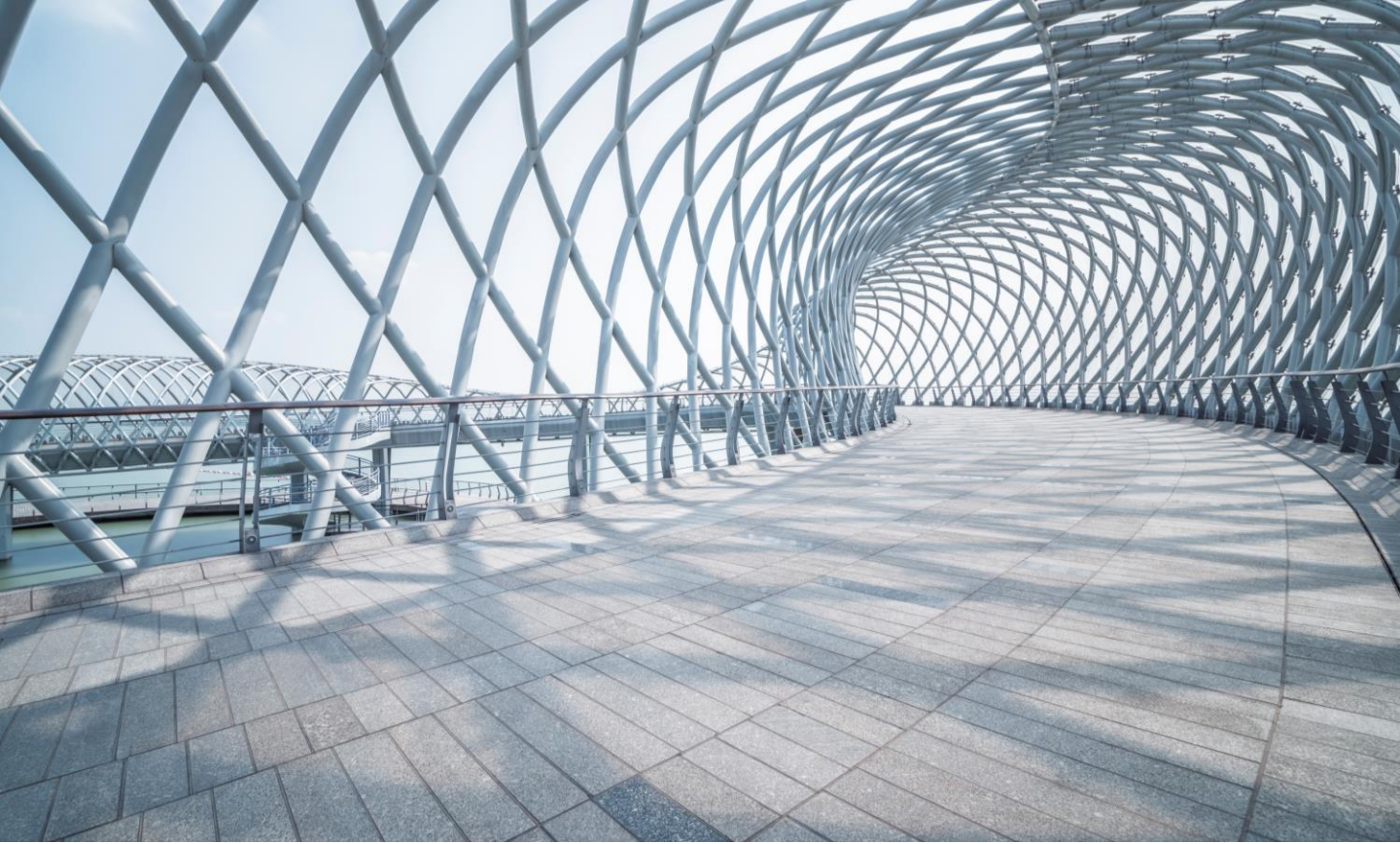


**PwC 베트남 뉴스레터**

# 새로운 세무행정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

2026년 2월





# At a glance

지난달 국회는 새로운 세무행정법(제108/2025/QH15호)을 승인했습니다.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, 가내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관한 일부 조항은 1월부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.

본 새로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추후 발행될 예정입니다.

---

# 주요 변화



## 01

### 세무조사

- 여태까지 베트남에서는 세무조사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- 상세한 세무조사(tax inspection)와 간이 세무조사(tax examination)입니다.
- 새 법은 상세한 세무조사(tax inspection)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여, 세무조사는 더 이상 세무 당국이 행하는 행정적 조치가 아님을 나타냅니다. 모든 조사 활동은 이제 조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.
- 간이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:
  -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최대 기간은 20일(달력일)로 증가하며, 최대 20일(달력일) 연장이 가능합니다(2019년 세무행정법에 따른 기본 10영업일(10영업일 연장 가능)에 비해 증가).
  - 이전가격 조사의 경우, 새 법은 최대 40일(달력일)로 정하며, 필요 시 추가로 40일(달력)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 이는 2019년 세무행정법과 달리 이전가격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별도로 구분하는 새로운 조항입니다.
  - 국제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경우, 세무 조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  - 정기 실시 및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특정 사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는 연 1회 이상 수행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해당 연간 한도는 이 범주 외의 다른 조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- 새 법은 상위 세무 당국이 이전에 결론이 나거나 하위 세무 당국이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을 내린 케이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재심의 기간은 초기 조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- 일반 조사는 20일, 이전가격 조사는 40일, 국제 정보 교환 조사는 최대 2년입니다. 재심사는 최초 조사 결론 또는 행정 위반 처리 결정이 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# 주요 변화



## 02

### 세무 행정 절차의 다양한 변경사항

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
#### 유리한 변화:

- 세무 당국 시스템 내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납세자가 제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과 연체 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새 법은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, 면제 및 감면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합니다. 이러한 절차는 전자 데이터, 위험 관리 기준, 그리고 세무 행정 시스템 내 자동화된 절차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. 관련 지침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.

#### 불리한 변화:

- **세금 신고 수정 기간 단축:** 2019년 세무행정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 수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새 법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합니다. 그러나 수정은 세무 당국이 해당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정을 내리기 전이거나, 수정된 신고서가 해당 조사의 범위 또는 기간을 벗어난 경우(이전 법률에 부합)에만 허용됩니다.
- **베트남 출국 금지:**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및 법적 대표자가 다음 경우에는 베트남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:
  - 세무 행정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대상; 또는
  - 더 이상 등록된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대상



# 주요 변화



## 03

### 국제 세무 협력 및 행정

- 이 법은 상호 합의 절차(MAP)와 이전가격 사전 합의 제도(APA)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으며, 향후 발행될 시행규칙에서 지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 이로 인해 MAP 청구 및 APA 신청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04

### 디지털 전환

- 세무 당국은 각 납세자별로 전자 세금 프로필을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를 장려합니다. 좋은 프로필을 가진 납세자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납세자의 준수 및 위험 수준 평가 기준과 관련된 세무 관리 조치는 추후 발간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.
- 세무 당국이 디지털 서명한 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유효성을 가집니다. 또한, 관련 데이터가 이미 정부 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경우 납세자는 종이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

# 주요 변화



## 05

### 기타 새로운 조항:

-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외국인인 간접 자본 이전의 경우, 베트남 대상 법인이 해외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책임집니다.
- 납세자의 정의는 (i)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진 외국인 기업 및 개인, (ii)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7월 1일과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 새로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연간 수입이 과세 기준에 도달하는 가내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VAT와 PIT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되며, 해당 과세 기간에 따라 각 세목별로 신고 및 계산해야 합니다.
-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가내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경우, 플랫폼이 온라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플랫폼 운영자는 가내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,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플랫폼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, 가내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책임져야 합니다.



# 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 
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Richard Irwin**  
Partner  
[r.j.irwin@pwc.com](mailto:r.j.irwin@pwc.com)



**우정균 – 호치민 사무실**  
Director, Korean CPA  
+84 (28) 3823 0796 Ext. 4611  
[jungkyun.woo@pwc.com](mailto:jungkyun.woo@pwc.com)



**Do Ngoc Lan Thanh**  
Partner  
[do.ngoc.lan.thanh@pwc.com](mailto:do.ngoc.lan.thanh@pwc.com)



**위규영 – 하노이 사무실**  
Manager  
+84 (24) 3946 2246 Ext. 1011  
[wee.kyue.young@pwc.com](mailto:wee.kyue.young@pwc.com)



**Pham Hoai An Thy**  
Director  
[pham.hoai.an.thy@pwc.com](mailto:pham.hoai.an.thy@pwc.com)



[www.pwc.com/vn](http://www.pwc.com/vn)